

정관

소관부서 : 전략기획팀

제 정 : 2007.11.9.

개정(01) : 2008.3.10.

개정(02) : 2009.3.10.

개정(03) : 2009.9.9.

개정(04) : 2010.3.19.

개정(05) : 2010.8.27.

개정(06) : 2011.3.23.

개정(07) : 2012.3.28.

개정(08) : 2012.8.30.

개정(09) : 2013.8.29.

개정(10) : 2014.3.20.

개정(11) : 2016.8.24.

개정(12) : 2019.12.30.

개정(13) : 2020.3.19.

개정(14) : 2021.3.24.

개정(15) : 2022.12.28.

개정(16) : 2024.12.27.

개정(17) : 2026.3.19.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Woori Asset Trust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나.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

-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 라. 대지조성사업
- 마. 기타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 2. 지상권, 전세권 및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관련 권리의 신탁
- 3. 부동산 담보신탁
- 4. 동산의 신탁
- 5.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
 - 가. 채무의 보증
 - 나.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 다.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 라.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 마.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 바. 채권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 사. 채무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 아.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 6.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 자문(부동산컨설팅) 및 상담
- 7.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발간 및 판매
- 8.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업무
- 11.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의 업무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창고업의 업무
-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 1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 15. 기타 자본시장법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16. 제1호 내지 제15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 등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대리점, 기타 영업소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ria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정관변경) 회사의 정관 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장 주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백만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으로 하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배당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 ① 회사의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법률적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그 취득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행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제2항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상실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권의 오손이 현저하여 그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② 전질이나 질권 이전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한다.

제16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회사의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그 대표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 거주소 또는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의 결의 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주주에 대하여 그 시간,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주의 제3자 배정

제22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23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② 회사의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적용은 이를 배제한다.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제26조(임원후보의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대표이사 후보추천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27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제23조, 제39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8조(이사회 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 권한 중 지배인 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외영업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외에 기타 일반적인 업무집행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0조(이사회 의장)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느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 1주간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다른 법령이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제34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6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사내이사의 겸직 제한) 회사의 사내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9조(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가 위원 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41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회사의 계산

제42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는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제2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서 제출)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 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결산기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로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세부내규) 회사는 경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내부통제기준) ① 회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투자위험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51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0:2007.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승인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009.3.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2009.9.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201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2010.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2011.3.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012.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012.8.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013.8.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2016.8.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202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2026.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대표이사 김 범 석

